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경우로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 19123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등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 해제 사유를 정하고, 은닉재산 중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은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2. ~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국민재산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2 제3호사목, 거목 및 너목”을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으로 한다.

1의2.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가. 임신부

나. 6세 미만의 사람

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

라.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신청”을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로 한다.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직장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 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의5제2호 중 “공과금”을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경매가 시작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재산의 은닉·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8.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9.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법 제81조의2제3항제2호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2.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2제1항”을 “법 제8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2제1항”을 “법 제81조의3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1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8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요청하여야”를 각각 “요청해야”로 한다.

제47조의4 중 “법 제81조의4”를 “법 제81조의5”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직종”으로, “공개하여야”를 각각 “공개해야”로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⑥ 법 제10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제81조제1항제4호의3 중 “법 제81조의2”를 “법 제8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6항”을 “법 제4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준요양기관”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3 제2호바목 중 “치료재료”를 “치료재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또는 「관세법」”으로 한다.

별표 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으로 한다.

5. 법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 + [(징수금 - 1억원) × 20/10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000만원 + [(징수금 - 5억원) × 10/100]
20억원 초과	2억6,000만원 + [(징수금 - 20억원) × 5/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41조의2제1항(제4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거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부과점수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1구간	134만원	87만원
	2구간	168만원	108만원
	3구간	227만원	162만원
	4구간	375만원	303만원
	5구간	538만원	414만원
	6구간	646만원	497만원
	7구간	1,014만원	780만원

비고: 위 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2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text{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text{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times (1 + \text{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별 금액을 말한다.
2. 위 계산식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하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3.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제1호의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지역가입자	1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2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3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4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5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6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7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1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2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3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4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5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6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7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비고: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라.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  
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33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제6조제2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제17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제50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32조

3. 별표 2 제3호사목, 거목 및  
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4.·5. (생략)

④ ~ ⑥ (생략)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  
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  
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  
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  
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3.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  
-----

4.·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직  
장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  
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  
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  
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  
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  
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  
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 제2항 또는 제3항-----  
-----  
-----  
-----  
-----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  
-----.

⑤ ----- 제2항 또는 제3항-----  
----- 제4항-----  
-----  
-----.

⑥ ----- 제5항-----  
-----  
-----.

⑦ ----- 제6항-----  
-----  
--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  
-----.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  
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 7. (생략)

<신설>

2. ----- 공과금(「국세기  
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  
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  
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 7. (현행과 같음)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  
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  
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  
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  
처분이 시작된 경우
2.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  
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경매가 시작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재산의 은닉·탈루, 거짓 계  
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  
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81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1. 2. (생략)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① 「신용정보

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8.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9.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법 제81조의2제3항제2호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81조의 3제1항 -----  
-----  
-----  
-----  
--.

- 1. 2.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① -----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공단에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 ④ (생략)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 3. (생략)

② 법 제81조의3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  
----- 법 제81  
조의3제1항-----  
-----  
-----  
-----  
-----

----- 해야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4제1항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1조의4제1항 -----  
-----  
-----  
-----  
-----

우를 말한다.

1. ~ 4. (생략)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 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4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48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 ③ (생략)

④ 공단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81조의4제1항  
-----  
-----  
-----  
-----  
-----  
-----  
----- 요청해야 -----.

----- 요청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우편송달) ----- 법 제81조의5  
-----  
-----  
-----  
-----.

제48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채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채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채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채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

-----  
----- 나이, 업종·직종-----  
----- 공개해야 -----  
-----  
----- 공개해야 -----  
-----.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 제6항-----

-----  
-----  
-----.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  
-----  
-----  
-----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생략)

-----  
-----  
-----  
-----.

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2